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36

발의연월일: 2020. 7. 30.

발 의 자:홍석준·박성중·추경호

김용판 · 김승수 · 홍준표

김예지 · 김기현 · 김태호

김정재 · 강대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시행령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,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, 한편으로 해당 요 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%에서 15%로,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%에서 30%로,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,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 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최대주주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1.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 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 식총수등의 100분의 30[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15]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
- 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

-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- 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
- 나. 상속개시일 전에 1년 이상 직접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1년 전부터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,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하였을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다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(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)로 취임할 것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18조(기초공제)	1.2	(생	제18조(기초공제) ①・② (현행과
략)			같음)
<u> <신 설></u>			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
			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
			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
			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
			<u>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</u>
			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
			자자(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
			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
			다. 이하 이 조에서 "최대주주
			등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
			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
			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
			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
			<u>니한다.</u>
			1.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
			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
			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
			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
			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
			<u>100분의 30[「자본시장과 금</u>
			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

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 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상장 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15]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 여 보유할 것

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<u>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</u> <u>상일 것</u>

나. 상속개시일 전에 1년 이 상 직접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1년 전부터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,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기

③ • ④ (생 략)

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,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,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간은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하였을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다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(개인사업 자의 경우 대표자)로 취임할 것

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

과 같음)
<u>⑥</u> <u>제4항</u>

⑥ ∼ ⑪ (생 략)

⑦ ~ ⑩ (현행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)